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435

제출년월일 : 1995년 3월 1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- 「세계화」가 모든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인식과 자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제화추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현재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
- 「무한 경쟁시대」에 효율적인 국제통상 및 교류를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.

주요개정골자

- 「국제화추진위원회」의 조례제명을 「세계화추진위원회」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전적인 세계화추진 체제를 완비코자 함.
- 위원회 기능중 세계무역기구(WTO)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통상대책 및 이와 관련된 무역 연계과제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구성인원을 30인으로 확대함

개정조례(안) : 불임

개정(안) 대비표 : 불임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과 제1조(목적)중 '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'를 '충청북도세계화추진위원회'로 한다.

제2조 제2호와 제5호 및 제8호중 '국제화'를 '세계화'로 하고
동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세계무역기구(WTO) 및 이와 관련된 무역연계과제등 국제통상대책에
관한 사항

제3조 제1항중 '20인이내'를 '30인이내'로 하고,
동 조 제3항중 '총괄반장'을 '담당계장'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'위원장이 위촉한다'를 '도지사가 위촉한다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